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9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김희정·곽규택·권영진

김상욱 • 서지영 • 안철수

이성권 · 김대식 · 김승수

박성훈 · 김종양 · 최은석

박성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있음.

그런데 대다수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자살·자해·폭력 등 위기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이로인해 긴급·고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는 청소년안전망에 전담기구,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 보니 긴급・

고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현장출입 등 행정조사와 관계기관 긴급회의 소집 요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한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방안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정례적·형식적 회의 운영에만 치우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보임.

이에 덧붙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배치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동종업무 종사자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임. 결국 청소년동반자의 부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상황파악과 그에 맞춘 보호·지원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지휘·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함(안 제9조의2).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

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관련 정책,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방안 등 주요사항을 심의함(안 제10조).

- 다.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발생 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응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담 공무원은 긴급·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장 출입·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
-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동반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의 2 등).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이란 청소년의 자살시도·자해·범죄 ·폭력·비행·일탈·학대·가족갈등·가정해체·가출·빈곤·고 립, 정신적·심리적 장애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사고·피해 등의 상황으로서 방치될 경우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기 어려워지거나 위기·피해 등의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을 말한다.
- 8. "고위기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 9. "청소년동반자"란 위기청소년을 주기적으로 직접 개별 방문하는 방식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굴·상담·지도·보호·지원 또는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제3항 중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 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 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민간 전문인력"을 "제3항에 따른 민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전담기구"로,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을 "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배치"로 한다.
 - ② 전담기구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공무워을 두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하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지원 관련 정책과 조례·규칙 제· 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 2.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3.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4.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안 파악, 원인 분석, 대응방안 및 고위기청소년의 긴급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6.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및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관련 사례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및 조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고 위기·피해 등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제3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제때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명된 긴급회의 소집권자는 지체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전담공무원은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 청소년과 그 밖에 관련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청소년동반자의 배치 및 지원 등) ① 위기청소년의 개별적 인 위기 상황, 위기 정도 및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둘 수 있다.

-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동반자를 두는 경우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및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강도 및 동종 업무 종사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소년동반자를 고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 청소년동반자의 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2항에 따라 적 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고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이란 청소년의 자살시도・자
	해 • 범죄 • 폭력 • 비행 • 일탈
	· 학대 · 가족갈등 · 가정해체
	・가출・빈곤・고립, 정신적
	·심리적 장애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사고ㆍ피해 등의 상황
	으로서 방치될 경우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기 어려워지거
	나 위기·피해 등의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
	<u>을 말한다.</u>
<u><신 설></u>	8. "고위기청소년"이란 위기청
	소년 중에서 청소년 긴급・고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u>을 말한다.</u>
<u><신 설></u>	9. "청소년동반자"란 위기청소
	년을 주기적으로 직접 개별
	<u>방문하는 방식을 통해 위기청</u>
	소년 발굴・상담・지도・보호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운영) ①·② (생략)
 -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u>기관 또는 단체</u>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 설>

•지원 또는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힌
<u>다.</u>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운영)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기관 또는 단체
 (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힌
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1)
<u>추진하기 위</u>
한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이
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에는 여성가족부렁
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협조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 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통합지원</u>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

(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
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
을 추가로 둘 수 있다.
<u>4</u>
제3항에 따른 민간 전문인력
<u>⑤</u> 전담기구
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배
<u> </u>
·.
세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통합지원
체계의 원활한 운영,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 청
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 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 영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지원 관련 정책과 조례·규 칙 제·개정 제안에 관한 사 항
 - 2.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3.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보호 ·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사항
 - 4.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의 현안 파악, 원인 분석, 대응방 안 및 고위기청소년의 긴급 보호 ·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 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6. 위기청소년 발견 · 보호 · 지 원 및 청소년 긴급 · 고위기상 황 대응 관련 사례검토와 개 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

<u>②</u>・<u>③</u>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u>안 사앙으도서 내동덩덩으도</u>	Ē
<u>정하는 사항</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형) o
과 같음)	
<u>⑤</u> <u>제4항</u>	_
	-
	_
	_
	_
	-

제12조의3(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 대응 및 조사) ① 지방자 치단체는 청소년 긴급·고위기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을 적시에 보호하고 위기·피해 등의 확 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심의위 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청소년 긴급·고위기상황 대응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긴급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3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제때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명된 긴급회의 소집권자는 지체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전담공무원은 청소년 긴급 ·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과 그 밖에 관련 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신 설>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의2(청소년동반자의 배치 및 지원 등) ① 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 상황, 위기 정도 및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 에 맞추어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청소년동반자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1 항에 따라 청소년동반자를 두 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및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동 반자의 업무 강도 및 동종 업 무 종사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신 설>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 여야 하며, 청소년동반자를 고 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 담복지센터별 청소년동반자의 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 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 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매년 조사 ·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 를 배치하고 제3항에 따른 적 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 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동반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3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 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 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그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